瑞山市行政情報公開條例廢止條例案

審 査 報 告 書

1. 審 査 經 過

가. 提出日字 : 1998. 3. 31

나. 提 出 者 : 瑞 山 市 長

다. 回附日字 : 1998. 3. 31

라. 上程日字 : 1998. 4. 9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總務課長 朴相龍)

가. 提案理由

o 종전에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(국무총리훈령 제288호)에 의거 시.군 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,

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이 공포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정이 되어 서산시행정정보공개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o 현행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◉ 본페지 조례(안)은 국무총리훈령의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조례로 제정·운영되어 왔으나,

◉ '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,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

◉ 현행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와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 되므로

◉ 현행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(적용범위)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산시 소관 사무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.운영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없었음

5. 討　　論 : 없었음

6. 少數意見 : 없었음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183호
의결년월일	1998. . . (제 회)

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8.3.31.

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83

제출 년월일 : 1998. 3. 31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□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○ 종전에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(국무총리훈령 제288호)에 의거 시.군 조례로써 운영해 왔었으나,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이 공포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규정 되어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

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